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0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선거구제	6
3. 개정안의 검토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7.
3. 회 부 일 : 2024.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소수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나,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적 중선거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
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
1조제2항, 제18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도시와 농촌 간 인구 밀도 차이를 고려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로,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생략)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는 1人으로 한다.	②----- -----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명 이상 4명 이하
<신설>	2. 1호 이외의 지역은 1명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 ⑥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	⑦ <u>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u> 및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⑧ ~ ⑩ (생략)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 ⑦ (생략)

<신설>

----. -----
-----.

⑧ ~ ⑩ (현행과 같음)

第188條(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公告・통지)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해당 국회의원지역구(1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8조의2(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公告・통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구(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第195條(再選舉)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선거를 실시한다. 1. (생 략) 2. 當選人이 없거나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舉區에서 選舉할 <u>地方議會議員定數</u>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 6. (생 략) ② (생 략)	<u>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u>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국회의원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人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第195條(再選舉)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구국회의원선거</u>(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말한다)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지역구국회의원정수 또는 지방의회의원정수</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2. 선거구제

“선거구”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¹⁾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²⁾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체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³⁾으로 설명됨.

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 규모(district magnitude)인데, 선거구 규모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 즉 선거구 의석수를 의미함.

“선거구제”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석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분류하는데, 복수의 후보자 중에 다수의 표를 얻는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선거제에서는 선출되는 의석수가 1인 경우를 소선거구제, 2~4석인 경우를 중선거구제, 5석 이상인 경우를 대선거구제라 함.⁴⁾

선거구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쉬워 후보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가 높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가 용이한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수당에 불리하며, 신진 인사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하고, 선거구획정에 있어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7), p.252

2)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1998), p.51

3) 정요섭, “선거론”, 박영사(1993), p.172

4) 음선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헌법적 설계”, 홍익법학 24권1호(2023), p.335

대선거구제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반대로 인지도 있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가 넓으며, 사표가 감소하고,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쉬우며,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후보자 과다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가 떨어지고 같은 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된다는 단점이 있음.

한편, 중선거구제의 경우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중간적 입장에서 양 제도의 결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 제도의 단점만 부각될 우려가 있음.

《 선거구제 유형별 일반적인 장·단점 》

유 형	장 점	단 점
소선거구제 (1인 선출)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쉬워 후보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 높음 •군소정당 난립 방지 •재·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가 용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수당에 불리 •신진 인사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함 •게리맨더링 가능성 •매수 등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높음
대선거구제 (5인 이상 선출)	•인지도 있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 확대 •사표 감소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쉬움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에 도움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 과다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후보자 많아 후보자와 유권자간 친밀도 감소, 같은 정당내 후보자간 경쟁 과열 •재·보궐선거 실시 및 선거관리 곤란
중선거구제 (2~4인 선출)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상대적 결점 완화	•경우에 따라서는 소, 대선거구제의 단점만 부각될 수 있음

※ 자료: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자료(2023.6.) p.168.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의회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출발한 이래 제3공화국까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다가, 1972년 유신체제 등장 이후 제5공화국까지는 2인 선거구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를 다시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선거구제 연혁 》

구 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의회구성	단원제	양원제(1960~)	단원제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 자료: 한국선거학회, “미래지향적인 선거구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p.30.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편집 및 수정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⁵⁾을 제안하며 세 가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안에 따른 선거구제는 각각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⁶⁾ 소선거구제였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하나의 선

5) 의안번호 제2120818호(2023.3.22. 제안)

6)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며,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고,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임.

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도시)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농촌)로 나누어 병행하는 것인데, 이는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를 감안한 것임.⁷⁾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선안 》

구 분	내 용
1안	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자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안번호 제2120818호)

7)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5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되는 초광역선거구가 생길 우려가 있음.

3. 개정안의 검토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역구 득표율 1위에 오른 후보만이 그 지역의 다수를 대표하여 의회에 진출하고, 2위 이하의 후보들은 자신들의 득표율이 아무리 1위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할 지라도 누구도 의회의 대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됨. 즉, 2위 이하의 후보들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될 뿐이어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임.

또한,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정당들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운영되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지역정당구도의 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⁸⁾

최대 득표를 한 한 사람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소위,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선거구제하에서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는 형태가 되기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 혹은 고착화시

8) 이상명,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2019.6.), p.12.

키고 있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도시와 농촌간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로,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변경함으로써 승자독식에 따른 지역구도의 고착화 문제를 완화하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⁹⁾

다만,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와 친화력이 높은 제도로 현행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낮고¹⁰⁾, 정책 중심의 대결보다 당내 계파 싸움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¹¹⁾ 후보난립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세밀히 살펴볼 수 없어 유권자에게는 후보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하며,¹²⁾

9) 손형섭, “선거구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론-소위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수용가능성 논의”, 세계헌법연구 제18권1호(2012), p.49.

10) “소선거구제의 결과이자 원인인 양당 중심의 현행 정당체계는 결선투표 없이 단순다수대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중략) 중선거구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당내 계파 싸움의 심화는 정당 기율을 약화시켜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여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에게 대놓고 항명하는 계파의 등장가능성이 대두하기 때문이다.” 이공주, “현행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4권1호(2018.3.), p.7.

11) “이러한 단점은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과반수 당선을 통한 집권을 노리는 집권 여당 자민당의 경우 선거에서 같은 당원끼리의 경쟁구도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돕는 돈과 조직을 가진 특정 파벌의 보스의 힘이 강력해졌고, 이들간의 공생관계로 인한 부조리가 심각했던 것이다.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보다는 돈과 조직을 가진 계파 수장급 정치인들이 공천을 독식했고, 사실상 무기한 당선됐으며 의원직 세습마저 빈번했다.”, 이공주, “현행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4권1호(2018.3.), p.13, 강원택,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입법과 정책 제1권제1호(2009), p.52.

12)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인지성이 낮다는 상대적 단점이 있다. 후보난립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선거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공주, “현행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4권1호(2018.3.), p.12.

소선거제에 비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민의를 더 비합리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음.¹³⁾

무엇보다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변경된다면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음.

참고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공론조사¹⁴⁾에서는 ①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숙의 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43%)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42%)이 비슷하였으나,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증가(43%→56%)한 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은 감소(42%→40%)하였고, ②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숙의토

13) “소선거제 하에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나마 선호하는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략) 그에 비해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주의 구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재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기성 기득권 정치인은 민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물갈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새 정치,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 강한 한국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공주, “현행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4권1호(2018.3.), p.14.

14) 공론조사란 주로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있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함. 최초 조사(숙의 전 조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숙의토론회 모집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조사(숙의 후 조사)는 2023년 5월 13일 숙의토론회 종료까지 참석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조사결과의 비교·분석은 숙의 과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모두 참여한 469명을 기준으로 함.

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48%→59%)을 보인 바 있음.

《 선거구제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 》

문) 지금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지금과 달리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한 선거구로 만들고, 그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	한 선거구에서 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 선출하는 방식	한 선거구에서 다섯명 이상 선출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계
숙의 전	(469)	43	42	8	8	100
숙의 후	(469)	56	40	4	0	100

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숙의 전	(469)	48	32	20	100
숙의 후	(469)	59	36	5	100

※ 자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결과 보도자료(2023.5.17.), p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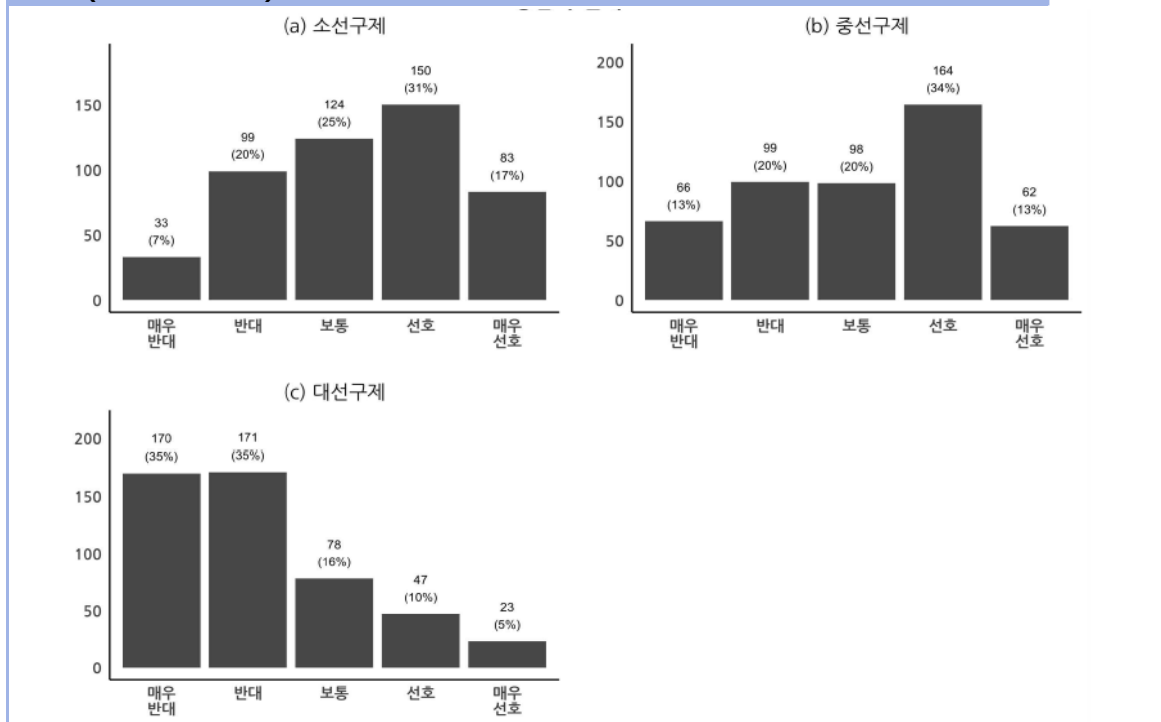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전문가조사¹⁵⁾에서는 ① 선거구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

15) 전문가조사는 한국정치학회 회원 약 2,000명과 한국공법학회 회원 약 1,000명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홍보했고,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 상 총 489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음.

는 비율(48%)이 중선거구제(47%)나 대선거구제(15%)보다 높았으며,
 ②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
 하는 의견(47%)이 많았음.

《 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조사 결과 》

문) 다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전체)



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합 계
전공자	9명(4%)	66명(26%)	56명(22%)	76명(30%)	45명(18%)	252명(100%)
비전공자	9명(4%)	68명(29%)	54명(23%)	70명(30%)	36명(15%)	237명(100%)
전 체	18명(4%)	134명(27%)	110명(22%)	146명(30%)	81명(17%)	489명(100%)

※ 자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조사 결과 보도자료(2023.8.29.), p.5., 8.

결국, 이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에 따른 지역구도의 고착화 문제 해결 필요성과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 새로운 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2
